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2018. 4. 17.

2017회 계 연 도 전 라 북 도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I . 결산검사 경과	5
II .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전라북도 재정의 개황	6
2. 세입세출 결산 요약.....	9
III . 일반회계	
1. 세입결산	10
2. 세출결산	15
IV . 특별회계	
1. 세입결산	19
2. 세출결산	20
V . 재무제표	22
VI . 성과보고서	24
VII . 기타 결산	
1. 채권현재액	26
2. 채무현재액.....	27
3. 기금.....	28
4. 공유재산현재액.....	29
5. 물품현재액.....	30
VIII . 수범사례 및 지적 · 개선사항.....	31
1. 수범사례(6).....	35
2. 지적 및 개선사항(6).....	45
IX . 현장방문결과	59
X .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61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수신 : 전라북도지사

2017년도 전라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8년 4월 8일 ~ 4월 17일(1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허 남 주(도의원)
- 위 원 : 정 호 윤(도의원)
- 위 원 : 최 영 규(도의원)
- 위 원 : 노 인 환(세무사)
- 위 원 : 유 경 준(세무사)
- 위 원 : 최 재 춘(전직 공무원)
- 위 원 : 김 진 술(전직 공무원)
- 위 원 : 강 문 섭(전직 공무원)
- 위 원 : 김 보 근(전직 공무원)
- 위 원 : 유 건 규(전직 공무원)

결산검사 의견서

전라북도지사 귀하

2018 년 4월 17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라북도 의회로부터 전라북도청 2017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년 4월 8일부터 2018년 4월 17일까지(1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사하고, 전라북도의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결산서와 회계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었으며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보조금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산 효율화,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액 직권 환급제 실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국 1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광역화사업에서 한우광역사업단 우수시상 등 기관표창이 있었고, 특히,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으로 대상을 수상하여 재정인센티브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최소화 노력, 세출예산 사고이월 부적정,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 본예산 편성 필요,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필요, 학교용지부담금 조기 전출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필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결과중심지표로 확대 운용 필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된 사례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하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여 「한국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라는 전라북도의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결산 감사 위원

대표위원	허 남 주 (서명)	감사위원	정 호 윤 (서명)
감사위원	최 영 규 (서명)	감사위원	노 인 환 (서명)
감사위원	유 경 준 (서명)	감사위원	최 재 춘 (서명)
감사위원	김 진 술 (서명)	감사위원	강 문 섭 (서명)
감사위원	김 보 근 (서명)	감사위원	유 건 규 (서명)

2017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8. 4. 8 ~ 4. 17(1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위원장	허남주	결산검사 총괄	
위원(간사)	정호윤	결산검사 업무 총괄 조정	
위 원	최영규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노인환	결산검사 업무 전반(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위 원	유경준	결산검사 업무 전반(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위 원	최재춘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김진술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강문섭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김보근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유건규	결산검사 업무 전반	

3. 결산검사 세부일정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4. 8	결산검사 위한 재정상황 파악	
4. 9	결산검사 보고회 및 자료요구	
4. 10~11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4. 13	현장방문(2023세계스카우트 잼버리공원 및 수상활동장)	
4. 14~16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4. 17	결산검사 폐회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 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전라북도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세계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세입은 연평균 3.2% 증가하고 세출은 2.9%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0.4%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 입	5,057,758	5,275,778	5,766,171	6,065,950	5,732,953
세 출	4,900,246	5,007,091	5,433,293	5,734,406	5,499,080
결산상잉여금	157,512	268,687	332,878	331,544	233,873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

2017년 순자산은 전년대비 454,166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3.28%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075백만원(1.6%)이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7년	14,508,134	821,092	13,687,042	5,356,780	5,228,200	△ 128,580
2016년	14,047,196	814,320	13,232,876	5,088,087	4,957,432	△ 130,655
증감	460,938	6,772	454,166	268,693	270,768	2,075

○ 최근 5년간 채무 추이

최근 5년간 채무의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일반회계 차입금은 중앙정부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각종 계약 등 채권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회계 차입금(a)	130,671	117,726	100,311	0	0
특별회계 및 기금 차입금(b)	623,911	644,861	689,470	729,023	743,671
채무부담행위(c)	0	0	0	0	0
채무 총합계(d=a+b+c)	754,582	762,587	789,781	729,023	743,671

(2) 재정건전성

○ 재정자립도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행정안전부-394, 2018.1.22.)에 의하여 재정운영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정자립도는 총수익에서 자체조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며,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수익, 세외수입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39%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자체재원 보다는 의존재원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수익과 국고보조금수익, 자치단체부담금수익 등 이전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회계연도 자주성 지표 분석

지 표 명	산 식	비 율
재정자립도	(자체수익 1,092,091백만원/총수익 5,356,780백만원)×100	20.39%

○ 안정성

안정성은 총수지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자산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총수지비율은 총비용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재정운영의 수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전라북도의 총수지 비율은 97.60%이다.

부채비율은 순자산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로 부채는 그 성격상 미래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순자산에 비해 부채규모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재정운영이 그만큼 경직되고 재정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전라북도의 부채비율은 6.00%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산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도로나 하천 등 사회기반 시설로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를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으로 나눈 유동비율은 비율이 작을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라북도의 유동비율은 22.18%로 안정적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순자산비율은 총자산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로 전라북도의 순자산비율은 94.34%로 매우 양호하다.

2017회계연도 안정성 지표 분석

지 표 명	산 식	비 율
총수지비율	$(\text{총비용 } 5,228,200\text{백만원} / \text{총수익 } 5,356,780\text{백만원}) \times 100$	97.60%
부 채 비 율	$(\text{총부채 } 821,092\text{백만원} / \text{순자산 } 13,687,042\text{백만원}) \times 100$	6.00%
유 동 비 율	$(\text{유동부채 } 186,068\text{백만원} / \text{유동자산 } 838,756\text{백만원}) \times 100$	22.18%
순자산비율	$(\text{순자산 } 13,687,042\text{백만원} / \text{총자산 } 14,508,134\text{백만원}) \times 100$	94.34%

2. 세입·세출 결산 요약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 · 세출결산 요약

(단위: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 =A-B)
합 계	5,792,360,408,350	5,732,953,035,796	5,499,080,669,488	233,872,366,308
일 반 회 계	5,268,222,680,920	5,207,294,804,027	4,987,166,484,282	220,128,319,745
특 별 회 계	524,137,727,430	525,658,231,769	511,914,185,206	13,744,046,563
공기업특별회계	-	-	-	-
기 타특별회계	524,137,727,430	525,658,231,769	511,914,185,206	13,744,046,563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233,872,366,308 (77,222,000,000)	65,481,369,991 (75,118,000,000)	5,692,541,680 (2,104,000,000)		1,180,694,972	161,517,759,665
일 반 회 계	220,128,319,745 (74,930,000,000)	63,498,176,261 (72,826,000,000)	5,551,557,660 (2,104,000,000)		1,110,719,787	149,967,866,037
특 별 회 계	13,744,046,563 (2,292,000,000)	1,983,193,730 (2,292,000,000)	140,984,020		69,975,185	11,549,893,628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 특별회계	13,744,046,563 (2,292,000,000)	1,983,193,730 (2,292,000,000)	140,984,020		69,975,185	11,549,893,628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732,953,035,796원으로 예산현액 5,792,360,408,350원보다 102,144,370,277원이 과소수납되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95.9%인 5,499,080,669,488원으로 차인잔액은 233,872,366,308원이다.

이중 명시이월비 65,481,369,991원, 사고이월비 5,692,541,68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1,180,694,972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1,517,759,665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233,872,366,308원임이 확인된다.

Ⅲ.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 전년대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다음연도이월액 (b-c-d)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비율 (b/a)	징수결정대비 수납비율 (c/b)	징수결정대비 결손비율 (d/b)
2017	5,268,222,680,920	5,230,293,403,853	5,207,294,804,027	2,689,793,630	20,308,806,196	99.3%	99.6%	0.1%
2016	5,233,513,514,410	5,164,824,232,881	5,125,346,037,725	3,691,723,240	35,786,471,916	98.7%	99.2%	0.1%
증 감	34,709,166,510	65,469,170,972	81,948,766,302	△1,001,929,610	△15,477,665,720	△0.6%	△0.4%	-

● 세입결산 개요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207,294,804,02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60,927,876,893원(1.2%)이 과소수납 되었고,

징수결정액 5,230,824,232,881원 대비 99.6%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2,998,599,826원(결손처분 2,689,793,630원, 다음연도 이월액 20,308,806,196원)임

- 세입 결산액 5,207,294,804,027원 중 지방세수입 1,034,818,589,760원 (19.9%), 세외수입 82,516,212,839원(1.6%), 지방교부세 894,526,008,600 원(17.2%),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2,894,372,226,800원(55.6%)으로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년대비 수납액과 비교하면, 지방세 65,511,257,056원, 지방교부세 133,574,833,600원, 보조금 24,644,789,8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 △1,683,783,942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40,098,330,212원이 각각 감소하였음

- 전년대비 수납액 증가원인은 부동산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31,269,183,990원 증가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158,219,623,400원 증가하였음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원)

구분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평가액부족	기 타
합 계	2,689,793,630	836,436,190	574,696,820	166,560,180	377,692,270	704,343,460	30,064,710
지방세수입	2,647,046,360	826,243,150	570,196,820	141,333,410	377,017,270	704,343,460	27,912,250
세외수입	42,747,270	10,193,040	4,500,000	25,226,770	675,000	-	2,152,460

● 세입금 결손처분에 있어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9.6%이며, 결손처분액은 2,689,793,630원으로서 지방세 2,647,046,360원, 세외수입 42,747,270원이다. 결손처분 주요사유는 무재산 836,436,190원 행방불명 574,696,820원, 시효소멸 166,560,180원, 배분금액부족 377,692,270원, 평가액부족 704,343,460원 기타사유가 30,064,710원이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차액
5,207,294,804,027	5,207,294,804,027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장부와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결손처분액 (c)	다음연도이월액 (a-b-c)
2017	5,268,222,680,920	5,230,293,403,853	5,207,294,804,027	2,689,793,630	20,308,806,196
2016	5,233,513,514,410	5,164,824,232,881	5,125,346,037,725	3,691,723,240	35,786,471,916
증 감	34,709,166,510	65,469,170,972	81,948,766,302	△1,001,929,610	△15,477,665,720

< 세입 과목별 총괄 >

(단위 : 원)

과목구분	2017 예산현액 (a)	2016수납액 (b)	2017수납액 (c)	예산대비 수납차액 (c-a)	전년대비 수납차액 (c-b)
합 계	5,268,222,680,920	5,125,346,037,725	5,207,294,804,027	△60,927,876,893	81,948,766,302
지 방 세	1,024,268,000,000	969,307,332,704	1,034,818,589,760	10,550,589,760	65,511,257,056
세외수입	77,164,508,000	84,199,996,781	82,516,212,839	5,351,704,839	△1,683,783,942
지방교부세	894,525,282,000	760,951,175,000	894,526,008,600	726,600	133,574,833,600
보 조 금	2,970,354,872,000	2,869,727,437,000	2,894,372,226,800	△75,982,645,200	24,644,789,800
지방채및예치금	-	-	-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01,910,018,920	441,160,096,240	301,061,766,028	△848,252,892	△140,098,330,212

< 지방세 >

(단위 : 원)

과목구분	2017 예산현액 (a)	2016수납액 (b)	2017수납액 (c)	예산대비 수납차액 (c-a)	전년대비 수납차액 (c-b)
합 계	1,024,268,000,000	969,307,332,704	1,034,818,589,760	10,550,589,760	65,511,257,056
취 득 세	501,050,000,000	466,481,661,460	497,750,845,450	△3,299,154,550	31,269,183,990
등록면허세	41,987,000,000	41,095,301,714	42,625,043,550	638,043,550	1,529,741,836
지방소비세	284,375,000,000	266,809,961,230	297,643,183,130	13,268,183,130	30,833,221,900
지역자원시설세	35,392,000,000	32,707,789,530	33,006,841,700	△2,385,158,300	299,052,170
지방교육세	154,993,000,000	155,837,458,500	157,353,320,800	2,360,320,800	1,515,862,300
자녀연도수입	6,471,000,000	6,375,160,270	6,439,355,130	△31,644,870	64,194,860

< 세외수입 >

(단위 : 원)

과목구분	2017 예산현액 (a)	2016수납액 (b)	2017수납액 (c)	예산대비 수납차액 (c-a)	전년대비 수납차액 (c-b)
합 계	77,164,508,000	84,199,996,781	82,516,212,839	5,351,704,839	△1,683,783,942
경상세외수입 소 계	21,957,899,000	24,586,494,660	22,912,336,736	954,437,736	△1,674,157,924
재산임대수입	579,131,000	623,528,687	569,787,080	△9,343,920	△53,741,607
사용료수입	5,686,393,000	3,793,110,883	5,695,167,250	8,774,250	1,902,056,367
수수료수입	5,205,110,000	5,580,201,440	5,544,974,475	339,864,475	△35,226,965
사업수입	1,295,521,000	1,527,382,570	1,259,255,530	△36,265,470	△268,127,040
징수교부금	4,943,708,000	7,603,225,210	5,109,318,260	165,610,260	△2,493,906,950
이자수입	4,248,036,000	5,459,045,870	4,733,834,141	485,798,141	△725,211,729
임사적세외수입 소 계	55,206,609,000	59,613,502,121	59,603,876,103	4,397,267,103	△9,626,018
재산매각수입	592,000,000	1,672,795,260	1,782,298,110	1,190,298,110	109,502,850
부 담 금	11,520,633,000	12,385,291,480	11,450,127,330	△70,505,670	△935,164,150
과징금및 과태 료등	484,288,000	908,693,270	625,862,540	141,574,540	△282,830,730
기 타 수 입	42,377,482,000	43,089,254,620	45,093,112,805	2,715,630,805	2,003,858,185
자녀연도수입	232,206,000	1,557,467,491	652,475,318	420,269,318	△904,992,17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단위 : 원)

과목구분	2017 예산현액 (a)	2016수납액 (b)	2017수납액 (c)	예산대비 수납차액 (c-a)	전년대비 수납차액 (c-b)
합 계	301,910,018,920	441,160,096,240	301,061,766,028	△848,252,892	△140,098,330,212
보전수입등 소 계	223,770,200,920	208,695,323,240	223,770,202,028	1,108	15,074,878,788
순세계잉여금	168,202,250,000	157,288,017,430	168,202,250,236	236	10,914,232,806
전년도이월금	55,567,950,920	51,407,305,810	55,567,951,792	872	4,160,645,982
내부거래 소 계	78,139,818,000	232,464,773,000	77,291,564,000	△848,254,000	△155,173,209,000
전입금	78,139,818,000	138,964,773,000	77,291,564,000	△848,254,000	△61,673,209,000
예탁금및예수금	-	93,500,000,000	-	-	△93,500,000,000

< 전년대비 실제수납액 비교 >

(단위 : 원)

구 분	2017년 (a)	2016년 (b)	차 액 (a-b)
합 계	5,207,294,804,027	5,125,346,037,725	81,948,766,302
지 방 세	1,034,818,589,760	969,307,332,704	65,511,257,056
세외수입	82,516,212,839	84,199,996,781	△1,683,783,942
경상세외	22,912,336,736	24,586,494,660	△1,674,157,924
임시세외	59,603,876,103	59,613,502,121	△9,626,018
지방교부세	894,526,008,600	760,951,175,000	133,574,833,600
보조금등	2,894,372,226,800	2,869,727,437,000	24,644,789,800
지방채(국내차입금)	-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01,061,766,028	441,160,096,240	△140,098,330,212

2. 세출결산

○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전년도이월액 (b)	예 산 현 액 $c=(a+b)$	지 출 액 (d)
2016	5,037,467,492,000	196,046,022,410	5,233,513,514,410	4,901,575,835,697
2017	5,153,276,150,000	114,946,530,920	5,268,222,680,920	4,987,166,484,282

구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c-d-e$)
	계(e)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6	114,946,530,920	96,278,264,660	18,668,266,260	216,991,147,793
2017	143,979,733,921	136,324,176,261	7,655,557,660	137,076,462,717

● 세출결산 개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153,276,150,000원과 전년도이월액 114,946,530,92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268,222,680,920원이며, 4,987,166,484,282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979,733,921원, 집행잔액은 137,076,462,717원이다.

다음연도 이월액 143,979,733,921원 중에는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발생한 “자금없는 이월액” 7,655,557,660원이 포함되어 있다.

● 금고 지출자료와 대사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결산액과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일치한다.

(단위: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차액
4,987,166,484,282	4,987,166,484,282	-

● 이용·전용 및 이체에 있어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2개부서 2건 23,500,000원이며
- 예산이체는 32개부서 232건, 167,140,249,970원으로, 이는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예산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 예산의 이월에 있어

본 연도의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명시·사고이월 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합 계	143,979,733,921	136,324,176,261	7,655,557,660	
자금있는이월액	220,128,319,745	63,498,176,261	5,551,557,660	
(자금없는 이월액)	(74,930,000,000)	(72,826,000,000)	(2,104,000,000)	

※ ()는 자금없는 이월액

검사결과 명시이월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등 136,324,176,261원, 사고이월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7,655,557,660원으로서 각각 이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정하였다.

이월액 143,979,733,921원중에는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발생한 “자금없는 이월액” 74,9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채무부담행위

2017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 신규발생액은 없다.

● 다른회계로부터 전입금·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130,590,684,000원 전출하였고,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로 34,829,000,000원 전출하였다. 각 기금별 전입금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0,706,00,000원, 재해구호기금 3,395,000,000원, 농림수산발전기금 2,000,000,000원, 재난관리기금 6,788,000,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 600,000,000원, 체육진흥기금 540,000,000원,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발전기금 800,000,000원 이다.

(단위 : 원)

전출금 \ 전입금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합 계
일반회계	130,590,684,000	34,829,000,000	165,419,684,000

● 다른회계로부터 예탁금·예수금

또한,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3,400,000,000원 예탁하였고, 기금에서 다른회계로 357,193,300,000원(일반회계 314,263,300,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2,930,000,000원)으로 예탁하였다.

(단위 : 원)

예탁금 \ 예수금	일반회계	기금회계	합 계
일반회계	-	23,400,000,000	23,400,000,000
기금회계	314,263,300,000	42,930,000,000	357,193,300,000
합 계	329,716,100,000	50,877,200,000	380,593,300,000

● 예비비 사용에 있어

○ 현 황

(단위 : 원)

회계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a-b)
합 계	128,200,188,000	3,910,253,000	3,845,824,384	64,428,616
일반회계	128,200,188,000	3,910,253,000	3,845,824,384	64,428,616

○ 내 용

예비비 예산액 128,200,188,000원으로서 사회재난과 부서인력운영비 외 31건 3,910,25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845,824,384원을 집행하고 64,428,6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사용내역을 보면 AI관련 비상지원에 3,294,318,324원, 구제역 및 AI 발생현장방역 등에 37,080,000원, 재해관련 긴급복구 지원에 41,400,000원, 시설 보수에 71,450,000원, 지방선거 관리경비 등 401,576,060원을 사용하였다.

IV. 특별회계

1. 세입결산

가. 총괄

(단위 : 원)

구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결손처분액 (c)	다음연도이월액 (a-b-c)
2017	524,137,727,430	525,658,231,769	525,658,231,769	-	-
2016	934,580,566,000	940,603,672,408	940,603,672,408	-	-
증감	△410,442,838,570	△414,945,440,639	△414,945,440,639	-	-

나. 회계별

(단위 : 원)

회계구분	2017 예산현액 (a)	2016수납액 (b)	2017수납액 (c)	예산대비 수납 (c-a)	전년대비 수납 (c-b)
합계	524,137,727,430	940,603,672,408	525,658,231,769	1,520,504,339	△414,945,440,639
기타특별회계 소계	524,137,727,430	486,300,153,139	525,658,231,769	1,520,504,339	39,358,078,630
농어촌주택사업	11,150,044,000	16,911,055,240	14,914,837,800	3,764,793,800	△1,996,217,440
의료급여기금	436,727,170,000	398,851,051,399	436,716,685,859	△10,484,141	37,865,634,460
동부권	34,978,628,000	30,921,048,630	32,685,192,930	△2,293,435,070	1,764,144,300
지역자원시설	41,281,885,430	39,616,997,870	41,341,515,180	59,629,750	1,724,517,310
공기업특별회계	0	454,303,519,269	0	0	△454,303,519,139
지역개발기금	0	454,303,519,269	0	0	△454,303,519,269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525,658,231,769원은 예산현액 524,137,727,430원의 100.29%로서 1,520,504,339원이 초과 수납되었다.

기타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3,764,793,800원,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에서 59,629,750원을 각각 초과수납 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0,484,141원과 동부권특별회계는 2,293,435,070원 과소 수납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금회계로 전환되어 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414,945,440,639원 과소수납하였다.

● 금고 수납자료와 대사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과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일치한다.

(단위: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차액
525,658,231,769	525,658,231,769	-

2. 세출결산

가.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금	예 산 현 액	지 출 액
2017	517,269,596,000	6,868,131,430	524,137,727,430	511,914,185,206
2016	929,021,566,000	5,559,000,000	934,580,566,000	832,830,583,504

구 분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c-d-e)
	계(e)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7	4,416,177,750	4,275,193,730	140,984,020	7,807,364,474
2016	6,868,131,430	4,500,000,000	2,368,131,430	94,881,851,066

나. 회계별

(단위 : 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524,137,727,430	513,581,569,086	511,914,185,206	4,416,177,750	7,807,364,474
기타특별회계	524,137,727,430	513,581,569,086	511,914,185,206	4,416,177,750	7,807,364,474
농어촌주택사업	11,150,044,000	9,790,114,000	9,790,114,000	-	1,359,930,000
의료급여기금	436,727,170,000	430,815,123,000	430,815,123,000	-	5,912,047,000
동 부 권	34,978,628,000	32,472,947,000	32,472,947,000	2,292,000,000	213,681,000
지역자원시설	41,281,885,430	40,503,385,086	38,836,001,206	2,124,177,750	321,706,474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 세출결산 개요

예산 현액은 524,137,727,430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이용·이체는 없으며, 예비비 사용액도 해당없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67%에 해당하는 511,914,185,206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9%에 해당하는 7,807,364,474원이었으며, 이는 의료기금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 세출결산액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과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일치한다.
(단위: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차액
511,914,185,206	511,914,185,206	-

● 이용·전용·이체에 있어

해당없음

● 다른회계로부터 전입금·전출금, 예탁금·예수금에 있어

전출금은 일반회계로부터 32,472,947,000원을 동부권특별회계로 61,905,184,000원을 의료기금특별회계로 36,212,553,000원을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로 전입금 처리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 처리내역을 없다.

● 예산의 이월에 있어

동부권 발전지원사업비 관련 국비 2,292,000,000원을 국비 미교부로 과소수납됨에 따라 당해 사업을 자금없이 2,292,000,000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1,983,193,730원을 명시이월, 140,984,2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다.

V. 재무제표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2016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4,508,134	14,047,196	460,938	3.28%
I. 유 동 자 산	838,756	672,834	165,922	24.66%
II. 투 자 자 산	662,738	524,538	138,200	26.35%
III. 일 반 유 형 자 산	681,775	629,296	52,479	8.34%
IV. 주 민 편 의 시 설	164,665	162,283	2,382	1.47%
V. 사 회 기 반 시 설	12,150,680	12,050,400	100,280	0.83%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9,520	7,845	1,675	21.35%
부 채	821,092	814,320	6,742	0.83%
I. 유 동 부 채	186,068	184,305	1,734	0.94%
II. 장 기 차 입 부 채	608,318	602,161	6,157	1.02%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26,706	27,854	△1,149	△4.13%
순 자 산	13,687,042	13,232,876	454,166	3.43%
I. 고 정 순 자 산	13,005,303	12,849,198	156,105	1.21%
II. 특 정 순 자 산	300,044	235,281	64,763	27.53%
III. 일 반 순 자 산	381,695	148,397	233,298	157.21%

2017회계연도말 전라북도의 자산은 14조 5,081억 34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4조 471억 96백만원보다 4,609억 38백만원(3.28%)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기 금융상품 등이 증가하여 유동자산이 165,922백만원(24.66%)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및 하천 등의 공공시설자산의 영향으로 일반유형자산 52,479백만원(8.34%)과 사회기반시설이 100,280백만원(0.83%)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2017회계연도말 전라북도의 부채는 821,092백만원으로 전년도의 814,320백만원보다 6,742백만원(0.83%) 증가하였는데, 이는 차량 증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 증가에 의한 것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7	2016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 업 순 원 가 (가 - 나)	1,670,296	1,709,684	△39,388	△2.30%
가. 사 업 총 원 가	4,944,610	4,601,347	343,263	7.46%
나. 사 업 수 익	3,274,315	2,891,663	382,652	13.23%
II. 관 리 운 영 비	242,762	316,987	△74,225	△23.42%
III. 비 배 분 비 용	40,758	39,098	1,660	4.25%
IV. 비 배 분 수 익	155,740	105,304	50,436	47.90%
V. 재 정 운 영 순 원 가 (I + II + III - IV)	1,798,076	1,960,466	△162,390	△8.28%
VI. 일 반 수 익	1,926,655	2,091,120	△164,465	△7.86%
VII. 재 정 운 영 결 과 (V - VI)	(128,579)	(130,654)	2,075	1.59%

전라북도 2017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944,610백만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274,315백만원을 차감한 1,670,296백만원이며, 총150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사회복지지원’(464,784만원)와 ‘일반공공행정추진’(392,740백만원)이었다.

또한, 2017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38,132백만원과 경비 8,448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11,982백만원, 기타비용 28,776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44,495백만원, 기타수익 111,245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재정운영결과는 △128,579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30,654백만원보다 2,075백만원(1.59%)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 △74,2256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사업총원가와 사업수익, 비배분수익이 각각 343,263만원, 382,652백만원, 50,436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순원가가 162,390백만원(8.28%) 증가하였다.

VI.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2017 결산액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수 (D)	달성률 (B+C)/A	
20개 실국원소	19	131	305	52	230	23	92.5%	5,499,081
감 사 관	1	1	3	0	2	1	66.7%	550
공 보 관	1	2	4	0	4	0	100.0%	311
인 권 센 터	1	1	1	0	1	0	100.0%	1,159
기 획 관 리 실	1	5	16	3	10	3	81.3%	691,993
도 민 안 전 실	1	4	12	3	9	0	100.0%	122,275
자 치 행 정 국	1	7	13	1	11	1	92.3%	106,925
농축수산식품국	1	7	19	5	12	2	89.5%	777,932
문화체육관광국	1	6	18	6	10	2	88.9%	289,620
환 경 녹 지 국	1	6	18	2	16	0	100.0%	238,726
복지여성보건국	1	14	29	5	23	1	96.6%	2,125,162
건 설 교 통 국	1	11	23	6	17	0	100.0%	341,203
소 방 본 부	1	4	5	0	5	0	100.0%	95,097
경 제 산 업 국	1	14	27	5	22	0	100.0%	181,436
대 외 협 력 국	1	3	9	1	8	0	100.0%	19,131
새만금추진지원단	1	2	4	2	2	0	100.0%	183,096
의 회 사 무 처	1	3	9	3	5	1	88.9%	11,001
농 업 기 술 원	1	10	31	6	24	1	96.8%	43,765
공 무 원 교 육 원	1	3	7	0	6	1	85.7%	6,514
보건환경연구원	1	2	10	0	10	0	100.0%	9,101
사 업 소	0	26	47	4	33	10	78.7%	254,082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전라북도는 2017회계연도의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9개)-정책사업 목표(131개)-단위사업(30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131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0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전라북도의 성과관리대상사업 결산액은 5,499,081백만원이며, 성과달성도 130%이상 52개지표는 초과달성하였고, 100%이상 230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며, 100%미만 23개 지표는 미달성하였다.

VII. 기타결산

1. 채권현재액

○ 현 황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발생액	소멸액	현년도말
합 계	442,424,370,520	100,767,555,058	232,778,285,590	310,413,639,988
일 반 회 계	20,889,843,410	2,046,108,008	1,945,852,450	20,990,098,968
공 기 업	356,876,000,000	-	-	-
기타특별회계	61,820,517,110	2,840,425,220	14,405,251,310	50,255,691,020
기 금	359,714,010,000	95,881,021,830	216,427,181,830	239,167,850,000

○ 내 용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0,413,639,988원이며, 전년대비 132,010,730,532원 감소하였다. 당해연도중 100,767,555,058원이 발생되었고 232,778,285,590원이 소멸하였다.

채권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이 476,193,646원, 융자금채권이 309,928,137,590원 기타채권이 9,308,752원이다.

주된 감소 사유는 기금회계에서 발생한 융자금채권 119,642,000,000원이 만기도래로 회수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채무현재액

○ 현 황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a)	발생액 (b)	소멸액 (c)	현재액 (a+b-c)
합 계	729,023,100,000	140,401,325,000	125,753,890,000	743,670,535,000
기 금	729,023,100,000	140,401,325,000	125,753,890,000	743,670,535,000

○ 내 용

검사결과 채무는 전년대비 14,647,435,000원이 감소한 743,670,535,000원이다. 당해연도중 140,401,325,000원이 발생하였고, 125,753,890,000원이 소멸하였다. 채무 종류별로 지역개발채권 743,670,535,000원, 정부차입금 0원, 민간차입금 0원이다. 향후 5년간 채무 상환예정은 다음과 같다.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 원)

구 분	2017년말 채무현재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합 계	743,670,535,000	135,352,740,000	142,829,305,000	158,510,535,000	166,870,995,000	140,106,960,000
기 금	743,670,535,000	135,352,740,000	142,829,305,000	158,510,535,000	166,870,995,000	140,106,960,000

현재시점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는 1.25% 복리이고 상환기간은 5년거치 일시상환임을 확인했다.

3. 기금

○ 현 황

(단위 : 원)

종류별	전년도말 (a)	조성액 (b)	사용액 (c)	현년도말 (a+b-c)
합 계	796,075,530,932	346,801,108,712	200,762,414,298	942,114,225,346
통합관리기금	51,500,000,000	1,549,236,890	8,552,636,890	44,496,600,000
재난관리기금	24,967,938,651	7,274,393,560	3,876,081,640	28,366,250,571
농림수산물발전기금	25,227,637,470	3,235,593,184	1,422,107,340	27,041,123,314
체육진흥기금	9,162,390,034	846,522,232	-	10,008,912,266
환경보전기금	2,080,193,380	50,925,829	54,000,000	2,077,119,209
자활기금	5,555,141,179	448,097,531	258,818,219	5,744,420,491
재해구호기금	20,939,656,207	3,742,527,430	424,669,720	24,257,513,917
성평등기금	3,293,676,344	102,093,700	100,000,000	3,295,770,044
노인복지기금	2,087,570,442	1,480,609	70,000,000	2,089,051,051
식품진흥기금	9,927,005,796	1,380,164,704	457,041,000	10,850,129,500
중소기업육성기금	197,823,219,128	24,593,923,492	22,416,290,237	200,000,852,383
남북교류협력기금	8,265,759,301	1,624,696,561	-	9,890,455,862
지역개발기금	435,245,343,000	301,041,452,940	163,130,769,252	573,156,026,688
혁신도시성과공유	-	840,000,050	-	840,000,050

○ 내 용

검사결과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의 2017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942,114,225,346원이며 전년대비 146,038,694,414원 증가하였다

당해연도중 346,801,108,712원 조성하였고, 200,762,414,298원을 사용하였다.

의무적으로 적립할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거 매년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의거 2017년도 중 재해구호기금은 3,395,000,000원, 재난관리기금은 6,788,000,000원을 각각 적립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의무 적립 비율에 상응하게 기금을 적립 운용하고 있다.

또한 2017회계연도의 기금 지출액은 200,762,414,298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아울러, 기금 연도말 조성액에는 일반회계에 예탁한 314,263,3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공유재산현재액

○ 현 황

(단위 : 원)

용 도 별		전년도말(a)	증감액(b)	현재액(a+b)
합 계		12,817,711,362,367	80,446,168,075	12,898,157,530,442
행정 재산	공 용 재 산	836,401,624,735	△127,399,653,963	709,001,970,772
	공공용재산	11,915,490,840,162	88,484,341,631	12,003,975,181,793
	보존용재산	15,732,094,200	-	15,732,094,200
일 반 재 산		50,086,803,270	2,193,325,407	52,280,128,677

○ 내 용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대비 80,446,168,075원이 증가한 12,898,157,530,442원이다.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62,043,047,365원, 건물 23,475,444,700원, 무체재산 42,000,000원, 유가증권 150,000,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작물 △4,658,534,990원, 기계기구 △5,789,000원은 감소하였다.

재산은 용도별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용재산 등이 있다. 공용재산은 709,001,970,772원, 공공용재산은 12,003,975,181,793원, 보존용재산은 15,732,094,200원, 일반재산은 52,280,128,677원이다.

5. 물품현재액

○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3,447	863	755	3,585
금 액	75,013,220,000	40,474,870,000	34,417,650,000	81,070,440,000

○ 내 용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6,057,220,000원이 증가한 81,070,44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주요변동사유는 소방펌프차와 소방물탱크차, 구조공작차 등 가격 증가임

VIII

수범사례 및 지적 · 개선사항

목 차

【 수범 사례 】

1. 보조금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산 효율화
2.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대상'수상
3.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액 직권 환급제 실시
4.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우수
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우수 수상
6.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광역화사업 우수

【 지적 사례 】

1. 불용액 과다 발생
2. 세출예산 사고이월 부적정
3.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 본예산 편성
4.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필요
5. 학교용지부담금 조기 전출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6. 예산의 성과보고서 결과중심지표로 확대 운영 필요

수 범 사 례

1. 보조금 관리계획 확립을 통한 예산 효율화
2.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대상'수상
3.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액 직권 환급제 실시
4.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우수
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우수 수상
6.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광역화사업 우수

1 보조금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산효율화

□ 현 황

- 지방보조금 규모는 3조 5천억원 정도, 해마다 늘어나 최근 5년간 ('12~'17) 27.3%(7천6백억원) 증가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큰 부담
 - 특히,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시군을 통해 지원되는 자치단체보조 및 사회복지 보조 예산 대폭 증가
-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 관리 필요

<'12~'17년 지방보조금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보조금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비 고
2012년	27,907	1,684	26,027	196	
2017년	35,538	1,751	33,490	297	
증감	7,631 (27.3%)	67 (3.98%)	7,463 (28.7%)	101 (51.5%)	

※ 지방보조금 단계별 관리 체계

- (예산편성) 지원근거 및 타당성 등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 보조금 예산편성 사전심사, 조례안 심사, 신규 행사축제 사전 심사* 등
 - * 신규 행사축제 사전심사로 사업의 적격성 여부 심의('17년 본예산부터)
- (선정·집행) 공모절차를 통한 보조사업자 자격여부 등 심사 선정
 - 지방보조사업 시행공고 추진,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표지판 설치
- (사후관리)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 보조사업 관리카드(e호조)에 성과평가결과 등록, 체계적 관리

□ 추진사항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단계별 관리로 지방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구분	예산 편성			선정·집행			사후관리
추진 상황	보조사업 근거 조례 제개정	예산편성 요구액 심사	신규 행사 축제심사	보조사업시행 공고('17.1월) -	보조사업자 선정	표지판설치	보조사업 평가
	15건 (제정8, 개정7)	추경 2회, 본예산 1회	25건 877백만원 (추경, 본예산)	실국별 사전공지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 총발공고)	491개 단체 127억원	786개 소	862건 3,167억

○ 전북형 특수시책 선도적 추진 (전국 최초 시행)

- ① 보조금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 정례화 : ' 16.1월~
- 매월 둘째주와 셋째주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전북형' 운영 체계 구축
- ② 보조사업 시행공고(연초에 사전 공지) 후 사업 일정별로 공모 추진 : ' 16.1월~
- 보조사업자의 계획성 있는 준비 및 다양한 단체의 참여 유도
- ③ 공모 신청자격 조건 완화하여 참신하고 능력있는 단체 기회 확대 : ' 16.1월~
- 보조사업사 선정 배점기준표에 수행실적 분야 삭제
- ④ 강사료, 출장비 및 주요 물품 임차구매 등 공통 집행 기준 마련 : ' 18.1월~
- 집행 기준의 명확화로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 ⑤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에 지방보조금표지판 설치 의무화 : ' 15.3월~
- 전국 최초「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제정과 함께 공익에 입각해 지방보조금 시설에 대한 관리
- ⑥ ' 15~' 17년도중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43건) 발굴 : ' 18.3월~
- 보조사업의 연속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과 사업담당자 사례공유

□ 추진성과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 156억원 예산 절감(' 17년)
 - 평가결과 미흡 사업은 보조금 지원 축소 등
- '15년 이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조금 단계별 관리로 매년 증가하던 보조금 증가를 억제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12~'15년 보조금 평균 증가율(7.32%)대비, '17년 증가율은 5.54%로 △1.78% 감소
-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조사업 이력관리
 - e호조 등록 : 941건 3,327억원(성과평가 862건 3,167억, 국가직접 79건 160억)
- 지방보조금 특수시책 등 선도적 추진으로 행안부에 지방보조금 정책표준모델 제시
 - 서울시, 제주도, 충남, 수원시 시정연구원 등 타시도 벤치마킹

※ 관련부서 : 예산과

2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고 달성

□ 추진개요

- (목 적) 일자리·SOC사업 등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공공자금의 상반기 투입으로 민간수요를 보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유도
*신속집행으로 평균 경제성장률 3% 중 최대 0.3%p 증가 기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용역결과/17.9.)
- (추진 방향) 일자리·서민 생활안정·SOC사업 중점 추진 및 민간 실집행을 제고
- (정부목표) 집행 대상액의 58%(광역), 55%(기초 및 지방공기업)
 - 도분청 예산액 5조 9,454억원 중 신속집행 대상액 4조 2,401억원
 - 14개 시군 예산액 9조 9,326억원 중 신속집행 대상액 4조 8,044억원

□ 추진사항

- 도 및 시군 협력으로 문제점 분석 및 애로사항 적극 해소 지원
 - 국고보조사업 자금 미교부 사업 파악 및 중앙부처 조기교부 협조요청
 - 관련부처 사전절차 단축 협의, 추진 지연사업 파악 적극 대응 해소
- 행정절차 단축 등 집행의 내실화 도모 및 추진실적 상시 점검
 -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긴급입찰 및 선금집행 활성화, 민경사업의 일괄교부 등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 추진지침’ 적극 활용

□ 추진성과

- '17년 1/4분기 정부목표 27% 대비 8.8% 상회한 35.8% 집행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1/4분기 ‘최우수’ 단체 선정
- 상반기 집행을 66.5%로 정부목표 대비 8.5% 초과 달성하여 행정안전부 평가 동종단체 1위로 ‘대상’ 수상(재정인센티브 220백만원 확보)
- 하반기 재정집행을 99.7%로 광역 시도 평균집행을 대비 4.3% 상회로 동종단체 1위로 ‘대상’ 수상(재정인센티브 75백만원 확보)

※ 관련부서 : 예산과

3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액 직권환급제 실시**

□ **현 황**

○ '17년 도세 미환급액 환급율 : 99.3%

(단위 : 백만원, %)

환급발생액 (A)	환급지급액 (B)	미환급액 (A-B)	환급율 (B/A)
5,389	5,352	37	99.3

□ **추진사항**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환급 확대
 -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해 환급금 발생 시 신속하게 직권환급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시 환급발생 대비 계좌 기재 안내
-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17.5.11. ~ 6.30.)
 - 환급통지서 일괄 발송, 전화연락·주소지방문, 전용 ARS 운영 등
 - 이·통장 회의, 반상회 등을 활용한 미 환급액 찾아가기 홍보
- 환급금 발생사실·수령방법을 알릴 수 있는 납세자 정보 정비
 - 납세자 정보(전화, 실거주지, 환급계좌)를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 환급 자료로 활용
- 취득세 신고 처리시 납세자 감면 착오신고 등 최소화
 - 납세자 신고시 감면사항 및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충분히 안내

□ **추진성과**

-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환급 확대로 도민 편의제공
- 미환급금 발생 최소화 노력결과 환급 발생액 전국 최저
 - 우리도 환급 발생률 0.52%(전국 평균 환급율 3.81%)

※ 관련 부서 : 세정과

4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우수

□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년 말(A)	2017년 말(B)	전년대비 현황	
		증감액(B-A)	증감률
3,269	1,705	△1,564	△47.8%

□ 추진사항

○ 도, 시·군 합동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 추진

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 도, 시·군 합동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 구성(시·군별 3~5명)
- 체납자 재산 압류, 자진납부 독려,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등

②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확대운영(2회 → 3회)

- 2017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 : 239건(66백만원)

③ 도, 시·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대책회의 개최 및 시·군 징수실적 현장점검(2회) 실시

○ 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국별 도우미제 운영

- 직원별 4~5개 실·국 지정 부과·징수 등 단계별 업무지도
- 체납액 발생액 최소화를 위해 현년도 미수납액 징수 독려·점검

○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실적분석 및 우수사례 공유

- 세외수입 징수실적 우수 시·군 선발 및 연구발표대회 개최

□ 추진성과

○ 2016년 대비 2017년 도 세외수입 징수율 2% 증가('16년 95.9% → ' 17년 97.9%)

○ 체납액 최소화 노력결과 전년 대비 동종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체납액 감소

- 우리도 체납액 감소율 △47.8%(동종 지자체 평균 증 10.0%)

※ 관련 부서 : 세정과

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우수(전국 1위) 수상

□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및 품질제고
- 평가대상 : 17개 시·도 (광역지자체)
- 사업내용 : 3개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산모신생아건강지원)
- 평가방법 : 서면 및 대면평가
 - ※ 보건복지부 내부 평가 및 외부 전문가 심의
- 평가내용 : 16개 평가지표 (계획, 집행, 성과, 환류)에 따른 사업 전반
- 평가기간 : 2017. 1월 ~ 12월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추진사항

- 2017년도 성과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도→ 복지부) : 2017. 5월
- 2017년도 서면평가 및 컨설팅 (복지부) : 2017. 6~8월
- 2017년도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도→ 복지부) : 2018. 1월
- 2017년도 사업 성과 PT 발표 등 대면평가 : 2018. 2월
 - ※ 2018. 4. 19. 성과 결과 시상 예정

□ 추진실적

-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용자 확대(제공기관 404개소 이용자24,866명)
 - 14개 시군 현수막 게시, 지역축제 홍보부스 설치, 아이디어공모전 실시, 홍보물 배포 등
 - 제공기관 정보공시제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
- 품질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제공기관 성과관리 등급제(ABC등급) 운영, 프로그램 품질인증제 실시 및 사후관리
 - 진입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운영(등록 전 신규기관 영세기관 등 총 153개소 239회 실시)
- 지역별 이용자 편중 해소 농촌 공급기반 확대
 - 지역별 대기자 및 탈락자 현황분석을 통한 사업량 조정(수시)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농촌 제공기관 확대(신규등록 11개소)

□ 추진성과

- 2018년('17년 실적)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 ‘최우수(전국 1위)’ 수상
 - ※ 4년(2015~2018년) 연속 ‘최우수’ 수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과 품질향상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관련부서 : 사회복지과

6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광역화사업 우수

□ 평가개요

- 평가목적 : 2017년 사업에 대한 우수성과를 발굴하여 향후 사업 운영 개선에 반영, 사업성과 향상 기여
- 평가대상 : 전국 도(경기, 강원, 충남 등 각 도 9개 기술원) 광역(10), 융·복합(6), 특화(13) 총 29개 협력단
- 평가방법 : 3개 산학연협력단 운영(발표평가)/최우수(1), 우수(1) * 협력단평가: 우수(5)
 - ※ 전북 3개 산학연협력단(한우, 수박, 허브) 및 기관운영에 대한 전국종합 공개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 평가내용 : 산학연협력단 품목선정, 지원체계, 협력단 구성, 사업운영, 사업성과 등
- 평가주기 : 매년
-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재해대응과)

□ 추진사항

- 사업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협약 「3개 협력단」 : 1 ~ 2월
- 「협력단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및 현장지원」 : 4 ~ 5월
 - 계획수립의 정확성, 우수성과 및 현장컨설팅 사례정보 공유
- 「중간진도관리 및 활성화방안 모색」 : 8월
- 「우수성과 도출을 위한 협의회」 : 10월
 - 성과분석 협조사항, 우수성과 도출을 위한 자료작성 요령, 목표대비 성과물
- 「사업추진 성과 결과평가 및 보완사항 점검」 : 11월
- 「3개 산학연협력단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전국 종합 공개발표 평가」 : 11월

□ 추진성과

-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광역화사업 기관평가(각 도)부문 전국 ‘최우수(1위)’ 수상
 - 도출된 사업우수성과를 도내 농업현장 확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 ※ 인센티브 195백만원 추가 배정으로 예산반영(’ 18)
- 우리 도 주관 한우광역사업단 ‘우수’ 수상

※ 관련부서 : 농식품개발과

지 적 및 개 선 사 례

1. 불용액 과다 발생
2. 세출예산 사고이월 부적정
3.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 본예산 편성
4.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필요
5. 학교용지부담금 조기 전출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6. 예산의 성과보고서 결과중심지표로 확대 운영 필요

1 불용액 과다발생

□ 5천만원 이상 사업중 불용률 50% 이상 내역

(단위:백만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 기념시설조성 (고은시인생가)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	0	0	200	100%
관광총괄과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10	90	0	120	57.1%
환경보전과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징수교부금	79	27	0	52	65.6%

□ 문제점

-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등을 고려하여 수요 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계상하고, 편성된 예산은 면밀한 세부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며,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액에 감액하여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문화예술인 기념사업 조성(고은시인 생가)사업 생가터 매입 불가로 100% 불용
 -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의 일부 사업포기(2017년 11월)로 57.1% 불용

-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위반 발생·징수에 따라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이 시·군에 교부되는바, 위반사항 예측불허로 65.6% 불용되었음

□ 개선의견

- 시·군의 사업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상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관광총괄과, 환경보전과

2 | 세출예산 사고이월 부적정

□ 현 황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지출원인 행위일	준 공 예정일	이월사유
합 계	8개 사업		854,135			
환경보전과	일반농산어촌개발 (평역생활자원화수선)	260,000	104,000	2017.12.22	2 0 1 8 하 반 기	사업지연
산업진흥과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전진기지조성 전략수립 및 타당성조사	198,078	99,039	2017.11.23	2018.5.18	절대공기부족
국제협력과	2018세단금세계계잡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다중행사	20,000	12,948	2017.11.23	2018.6.30	행사연기
자연재난과	재난대비 예경보시 시스템 성능 개선사업	100,000	94,180	2017.11.28	2018.4.1	절대공기부족
방호예방과	교육부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	210,000	112,802	2017.11.24	2018.2.12	절대공기부족
도로관리 사업소	지방도 배수시설 정비사업	5,169,054	42,349	2017.12.18	2018.2.21	절대공기부족
도로관리 사업소	지방도 긴급보수 및 안전시설 정비사업	1,738,465	17,479	2017.12.27	2018.1.9	절대공기부족
도로관리 사업소	대풍교 내진보강공사	2,300,000	371,338	2017.11.16	2018.5.3	절대공기부족

□ 문제점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에 대하여 다음회계연도에 사고이월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현황과 같이 일반 농산어촌개방 외 7개 사업 854,135천원의 이월사유와 사업 준공예정일을 살펴보면 회계연도내에는 지출할 수 없는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준공기한이 다음연도에 예정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지방재정법』 제 50조 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부적정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하였음.

□ 개선방안

-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비예산에 대하여는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매년 사고이월비가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천재지변, 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관련부서 : 예산과, 환경보전과, 산업진흥과, 국제협력과,
자연재난과, 방호예방과, 도로관리사업소

3 |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비 본예산 편성

□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AI		구제역		기타		
			예방	사후	예방	사후	예방	사후	
2015년	36,046	35,679	8,246	9,345	7,898		7,258	2,932	
2016년	31,377	30,448	6,837	2,120	7,541	2,040	6,725	5,185	
2017년	79,953	79,953	10,129	47,001	10,113	1,291	6,181	5,238	
2018년	30,615	7,852	2,142		3,658		1,570	482	

□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 예비비 집행현황

(금액: 백만원)

구분\년도	2014	2015	2016	2017	4년 평균	비고
AI·구제역 등	1,500	364	1,627	3,331	1,701	

□ 문제점

- AI·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주기 짧아지는 추세
- 최근 4년간 AI·구제역 연이어 발생으로 향후 매년 발생 예상
- 시·군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소 동시 설치 및 가동
- 신속한 살 처분, 매몰지연 등으로 전염병 확산 우려
- 긴급 방역비 예산 미편성으로 매년 예비비 사용에 따른 초기 신속대응 및 선제적 대응 곤란

□ 개선방안

-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초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소 동시 설치·운영, 긴급백신구입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본예산에 편성

□ 기대효과

- 14개 시·군이 동시에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 확산 최소화
-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예산 즉시투입으로 초기 현장방역 집중

※ 관련부서 : 동물방역과

4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필요

□ 2017년도 추경예산 주요 삭감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100% 전액		50%이상~100%미만		20%이상~50%미만		20%미만	
건	삭감액	건	삭감액	건	삭감액	건	삭감액	건	삭감액
28	7,710,203	11	2,369,000	6	759,122	5	1,193,952	6	3,388,129

* 2017년도 추경예산 주요삭감 내역 (별첨)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적정 사업시기 등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는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절한 자원배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그런데 전라북도 본청 15개 부서에서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이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중앙부처의 지침변경 또는 사업여건 변화 등의 이유로 28개사업 7,710,203천원을 추경예산에 삭감요구 하였고, 예산과에서는 이를 삭감 처리하였다.

□ 개선방안

- 당해연도 예산편성시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선행되도록 하고, 2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 관련부서 : 정보화총괄과, 농촌활력과, 친환경유통과, 농식품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정책과, 사회복지과,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 항만공항하천과, 일자리경제정책관, 미래산업과, 산업진흥과, 국제협력과

【별 첨】

2017년 추경예산 주요 삭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경정액	기정액	삭감액	비고
계		28 건	103,476,633	111,186,836	7,710,203	
1	정 보 화 총 괄 과	·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218,474	300,000	△81,526	자체
2		· 정보통신망 회선료(행정전화요금)	214,000	264,000	△50,000	자체
3	회 계 과	· 청사시설관리용역(시설물, 청소, 방역,조경등)	2,811,000	3,172,000	△361,000	자체 (낙찰차액)
4	농 활 력 촉 진 과	· 국제 슬로푸드 페스티벌 참가 지원	-	50,000	△50,000	자체
5		· 향토산업 육성사업(운영지원)	1,170,000	1,540,000	△370,000	지특
6		· 6차산업 수익 모델 사업(운영)	-	50,000	△50,000	지특
7	친 유통 환 경 과	·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	100,000	△100,000	자체
8		· 쌀 경쟁력 제고사업	2,227,500	2,610,000	△382,500	자체
9		· 학교 무상급식 지원	17,132,762	17,415,763	△283,001	자체
10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038,115	3,099,833	△61,718	자체
11	농 산 식 업 과	·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	90,000	140,000	△50,000	자체
12		· 장생영농조합법인 가공시설 지원	-	55,000	△55,000	자체
13	문 예 술 과	· 고은시인 생가 복원사업(군산)	-	100,000	△100,000	지특
14	체 정 책 과	· 2018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개선 지원	-	1,100,000	△1,100,000	자체
15	사 복 지 과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3,972,530	76,222,440	△2,249,910	자체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경정액	기정액	삭감액	비고
16	보건의료과	· 방문형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사업	-	66,000	△66,000	자체
17	건강안전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956,870	2,527,200	△570,330	지특
18		· 전복음식문화대전	110,878	250,000	△139,122	자체
19	항만공항하천과	· 하천 관련 배상금 등	-	50,000	△50,000	자체
20	일자리정책	· 마을기업 육성	-	468,000	△468,000	지특
21	미산업과	·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	-	130,000	△130,000	자체
22	산업진흥과	· 로봇융합 비즈니스지원사업	50,000	100,000	△50,000	자체
23		· 풍력에너지 전력망 적응기술 연구센터 지원	-	200,000	△200,000	자체
24	국제협력과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	174,504	296,600	△122,096	자체
25		· 세계스카우트 핵심멤버 초청 세미나	100,000	300,000	△200,000	자체
26		· 아제르바이잔 SMART JAMBOREE BOOTH 운영	80,000	200,000	△120,000	자체
27		· 2023 세계잼버리 3D 과정활동 영상 구현	100,000	300,000	△200,000	자체
28		· 2023 세계잼버리 비콘 APP 구현	30,000	80,000	△50,000	자체

5

학교용지부담금 조기전출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 현 황

① 총 괄(2017. 12월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징 수 및 사 용			전 출 실 적		
	징수액	사용액	사용잔액	교육청요구액	전출액	미전출액
총 계	69,785	58,542	11,243	79,270	52,845	26,425
' 97 ~ 2003.5 이전	-	-	-	24,065	-	24,065
2003.5 이후	69,785	58,542	11,243	55,205	52,845	2,360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 2003. 5

② 최근 3년간 전출내역(도 ⇒ 교육청)

(단위:백만원)

구 분	징 수 액	교육청요구액	전출액	미전출액	비 고
합 계	15,282	13,696	22,453	△8,757	
2015년	5,598	10,209	13,758	△3,549	
2016년	6,153	470	3,670	△3,200	
2017년	3,531	3,017	5,025	△2,008	

③ 조례제정 및 특별회계운용

(2018. 3. 현재)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비고
조례 제정	2001.3	2001.11	2003.8	2003.10	2003.5	2001.5	2009.6	2001.11	
시행규칙	여	여	여	여	부	여	여	부	
회계운용	여	여	여	여	부	여	여	여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2017. 11. 17 개정

□ 문제점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에서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는 2003. 5. 제정, 특별회계 설치는 2017. 11월에 개정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아직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 또한 학교용지부담금매입비 등 법정전출금의 의무적 필수경비는 예산편성시 계상하여 의무사항을 준수토록하고 있어 그동안 교육청으로 미전출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최근 3년간 8,757백만원의 과년도분을 추가편성 전출하여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잔액이 11,243백만원이 있음에도 2003년도 조례제정 이전 미전출분 24,065백만원을 포함 26,425백만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아있어 전북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전입비율이 60%로 도평균 91%(전국 88%)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전입비율은 2017년 지방교육재정 분석종합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 참고

□ 개선사항

- 학교 신설과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필요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정 회계 관계공무원 지정 등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 2003년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분에 대해서도 법정전출금 의무경비 예산편성을 위한 이행장치 마련 등 조기전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관련 부서 : 예산과, 주택건축과

□ 현 황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시부터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의 의무화되었으며,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예산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예산과 무관한 지표 사용 지양’, ‘결과중심적 지표 사용 필요’, ‘전문가 컨설팅 코칭 필요’, ‘BSC성과달성여부 객관적 외부 평가 필요’ 하다는 개선의견 제시

□ 문제점(미진사항)

- 전라북도에서는 BSC 성과관리제도 운영 외부 컨설팅 기관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발전적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상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 전년도 지적사항 중 하나인 ‘결과중심적 지표 사용 필요’ 건에 대하여는 2017회계연도에서도 성과이행 중간 과정지표를 사용한 사례가 일부 있음.

□ 개선사항

- 성과이행 중간 과정지표 사용을 지양하면서 결과중심적 지표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 BSC성과지표 설정단계부터 예산사업 실행과제에 대하여는 결과중심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성과관리부서가 긴밀히 협의하여 지표설정에 신중한 노력 필요

※ 관련 부서 : 예산과, 성과관리과

IX. 현장방문 결과

1.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요

○ 일반현황

- 기간·장소 : 2023. 8월중(12일간), 새만금 일원
- 참가 규모 : 169개국 5만여명(국외 4만명, 국내 1만명)
- 주요 행사 : 개영식, 과정활동(야영, 수상활동, 문화체험 등), 한국의 밤, 국제의 밤 등

○ 향후계획

- 세계스카우트 센터 건립을 위한 글로벌센터 기본계획 구상 용역 실시
-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부지매립, 상하수도, 가스공급 등) : 2018 ~2023

2. 잼버리 수상활동과정 시설 조성

○ 일반현황

- 위 치 : 직소천 일원(부안군 변산면 중계리~하서면 백련리)
- 사업규모 : 850,000㎡
- 사업목적 : 잼버리 대회장과 연계 수상레저체험, 암벽등반장 등 조성
- 사업내용 : 가족야영장, 청소년 야외 수련시설, 암벽 등반장, 물문화 테마공원 등

○ 향후계획

- 직소천 주변 잼버리 수상활동 과정 타당성 용역 시행 : '18. 6월

【관련 사진】



2023잼버리공원



잼버리 수상활동장

X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2016회계연도 지적·개선 사항 처리결과 -

1. 순세계잉여금 발생률 증가 추세(예산과)
2. 초과세입에 대한 추경예산편성시 적절한 반영 필요(예산과)
3.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 강구(세정과)
4. 결손처분시 처리 절차 강화 방안 필요(세정과)
5. 세출예산 전액이월 과다발생 방지 방안 필요
 - ①농업정책과, ②해양수산물과, ③문화예술과, ④도로공항과, ⑤항만하천과,
 - ⑥전라북도도립미술관, ⑦주택건축과
6.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 ①생활안전과, ②산림녹지과, ③의회사무처, ④농업기술원, ⑤농식품인력개발원,
 - ⑥정보화총괄과, ⑦총무과, ⑧축산과, ⑨문화유산과, ⑩투자유치과, ⑪기업지원과,
 - ⑫산업진흥과, ⑬국제협력과, ⑭새만금개발과, ⑮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
 - ⑯여성청소년과, ⑰새만금수질개선과
7. 예산의 성과보고서 실적검증 방법 보완 필요(예산과, 성과관리과)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예산과
제 목	1. 순세계 잉여금 발생률 증가 추세
지적내용	○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0.4% 감소하였지만 2012년과 비교해보면 2.0%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세입추계를 소홀히 하였거나 예산 집행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데 기인함 ○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불용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미집행액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추경에서 조정하여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검토 필요
처리계획	○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초과분과 세출의 불용액 등으로 구성 - 세입초과분의 대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 세출 불용액은 예비비와 실과소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 ○ 세입추계는 세입부서인 세정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 부서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시 사전절차 이행과 계획수립이 구체화된 사업을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미집행액 발생시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예산과
제 목	2. 초과세입에 대한 추경예산편성시 적절한 반영 필요
지적내용	○ 세입예산에 대한 당초 추계가 너무 과소하게 잡혀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집행에 적기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많으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나, 설정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처리계획	○ 초과세입은 추경편성을 통해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과소세입추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 시달 시 세정과 등 세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증액은 주로 집행부서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추경 시 삭감처리 한 집행잔액을 반영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데, 이 또한 집행부서, 회계부서 등 사전계도를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자치행정국 세정과
제 목	3.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방안 강구
지적내용	2016년 이월액이 32,51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964백만원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이월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증가사유) 2016년 감사원 감사 시, 구 35사단 부지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건설업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요구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함 ※ 관련 체납액 157억원 ○ (진행상황) 2016. 10월 사업시행사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계류중) - 사업시행자의 “사실상 취득”으로 간주할 취득요건(이전등기)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부과취소)될 것으로 예상됨 - 위의 건 심판계류중인 체납액(157억원)을 제외하면 이월체납액은 168억원으로 2015년 결산대비 7억원 축소 ※ 조속한 심리의결 요청을 위해 조세심판원 2회 방문(‘16. 12월, ‘17. 2월) □ 처리결과(계획) ○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17. 상반기 ○ 도, 시·군 합동 체납세 징수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연 2회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처분활동 강화 : 연중 -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7월)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예금재산 일괄조회(5월, 11월) -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11월) ○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징수 : 연 2회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자치행정국 세정과
제 목	4. 결손처분시 처리절차 강화 방안 필요
지적내용	2016년 회계연도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에 있어 기타사유가 1,901백만원(5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사유 중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59건 1,669백만원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평가액 부족)에 의한 처분이었음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결손처분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가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결손처분 등 체납처분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음 ○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 제2호 제외) 외에는 “기타사유”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기타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 기타사유 중 “평가액 부족”의 처리 건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의한 국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한 건임 ☞ 평가액부족 : 압류재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 □ 처리결과(계획) ○ 현행 지방세징수법*에 압류재산 평가액 부족에 의한 결손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와 법령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행정자치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음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법되어 2017년 제정·시행(2017.3.28.)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농축수산물식품국 농업정책과
제 목	5-1. 세출예산 전액이월 과다발생 방지방안 필요
지적내용	○ 방조제 개보수사업의 경우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 200백만원(국비전액)에 대하여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아니한 채100% 명시이월 조치하였음 ○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연도내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같이 전액 100% 이월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해당사업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 ○ 동 사업은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금강하구둑 방조제개보수를 위해 농식품부가 ‘16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 16.2월 국비예산 200만원 교부 통보 - 1회추경시 사업예산 200백만원 예산 반영 - ’ 16년도 설계용역 추진 후 ‘16년말 공사발주하였으나, 중앙부처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미교부로 국비예산 200백만원 전액 명시이월 조치 - ’ 17.4월 이월예산 전액 집행 완료 □ 처리결과(계획) ○ 신속한 사업추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미교부로 인한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발생 방지 노력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해양수산과
제 목	5-2. 세출예산 전액이월 과다발생 방지방안 필요
지적내용	○ 세부사업 예산중 전액이월 사업 -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도비 178백만원) - 전라북도해양수산발전계획수립(도비 167백만원)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실시설계 용역 1식 / ' 16. 11 ~ ' 17. 5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 16. 4. 22 -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기본계획 수립 : ' 16. 7. 30 - 원가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 16. 9. 7 -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주)한국해사기술) : ' 16. 10. 26 -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 16. 11. 3 - 장비선정위원회 개최(주기관, 발전기, 추진기) : ' 17. 2. 9 -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 ' 17. 4. 27 ☞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명시 이월 ○ 전라북도해양수산발전계획수립(계획수립 용역 1식 / ' 16. 8. ~ ' 17. 8월) - 과업지시서 작성 및 전문기관 등 과업내용 자문 : ' 16. 6월 - 용역 추진계획 수립 : ' 16. 6. 30 - 원가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 16. 7. 27 -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16. 8. 25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 16. 9. 12 - 연구용역 자문회의 개최 : ' 17. 1. 25 ☞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명시 이월 * ' 16년 제1회 추경(5월) 사업임 □ 금후계획 ○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 17. 5월 ○ 전라북도해양수산발전계획수립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중간보고 : ' 17. 5. 24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용역 완료 : ' 17. 8월 □ 처리결과 ○ 계획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문화예술과
제 목	5-3. 세출예산 전액이월 과다발생 방지방안 필요
지적내용	고은문학사업 예산 2억원에 대하여 문체부 국비 미송금으로 100% 명시이월 조치 하였음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문체부 세수부족으로 고은문학사업 2억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자금 없는 이월) 처리 되었음. ☐ 처리결과(계획) ○ 고은문학사업 2억원은 17. 3월 국비 전액 송금 되었으며, ○ 향후에는 국비 미송금으로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부처 방문 자금 송금 요청 등 국비 조기 확보에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항만공항하천과
제 목	5-4.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사업 예산 전액이월
지적내용	○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사업비 250백만원에 대하여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아니한 채, 100% 명시이월 조치하였음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추경으로 예산 확보 및 용역수행기관 선정 지연으로 예산이 전액 이월됨 -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사업은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 논리 개발 등을 위한 용역으로서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음('16.5.31) - 국책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와 용역수행을 협의('16.7월)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16.8.11) 되었으나, KMI가 용역수행을 포기하였음('16.8.19)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 추진하여 입찰 공고('16.10.6)를 하였으나, 1개사 접수로 유찰되어, 입찰 재공고('16.11.1) 후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연말에 착수되어('16.12.1)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7.11.30 ○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지출 : '17.12.20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교통물류도로과
제 목	5-5. 세출예산 전액이월 과다발생 방지방안 필요
지적내용	동향~안성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 편성된 914백만원에 대하여 용역진행 등을 이유로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아니한 채 100% 명시이월 조치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국지도 건설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완료 후 우리 도로 설계도서 인수인계 하여 공사 발주함 - 익산청에서 총사업비 협의 등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도서가 미이관 되어 사업추진 지연됨에 따라 2016년 사업비 일체를 명시이월하게 됨 □ 처리결과(계획) - 익산청에서 총사업비 협의 후 설계도서를 이관하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후 예산 집행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제 목	5-6. 세출예산 전액이월 과다발생 방지방안 필요
지적내용	○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사업의 경우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 2,500백만원에 대하여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아니한 채 100% 명시이월 조치하였음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추경으로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예산이 전액 이월됨 -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사업은 과부하 상태인 수장고 증축으로 체계적인 작품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음('16.5.31) - 설계용역 착수('16.9.22) 후 용역완료가 '16.12.25일 예정 되었으나, 건축 협의, 모악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득이 하게 전액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음 ○ 추진현황 - 설계용역 완료 : '17. 3. 5. - 건축공사 착수 : '17. 4.21. ☐ 처리결과(계획) -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공사 완공(예정) : '17.12.16.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제 목	5-7. 세출예산 전액이월 과다발생 방지방안 필요
지적내용	-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 주택건축과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92백만원의 전라북도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용역계약이 유찰됨으로서 당해연도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액 전체에 대하여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음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용역기간 10개월로 연내완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입찰결과 유찰로 인해 용역계약이 지연되어 연내집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조치함. - 추진경과 · 추진계획 수립 : 2016.02.02. · 행정절차이행(원가심사) : 2016.02.02. ~ 02.19. · 용역 발주계획 수립 : 2016.03.15. · 용역계약 요청 : 2016.03.17. · 입찰공고(1차) : 2016.04.07.(유찰) · 입찰공고(2차) : 2016.04.27.(유찰) · 입찰공고(3차) : 2016.05.20.(유찰) · 입찰공고(4차) : 2016.06.16. · 계약체결 : 2016.07.21. * 용역기간 : 2016.08.01.~2017.05.30. □ 처리결과(계획) -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17.05.30. -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지출 : 2017.06.20. ※ 사전 추진계획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안전정책관실
제 목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지적내용	지방재정법 또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각종 예산은 면밀한 세부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세출예산 불용률 100%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해당사업 : 재난예방 교육용 장비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예산액(5,000천원), 집행잔액(5,000) / 100%불용 ○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군산시와 사업수행 단체간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불용됨. 따라서 사업계획 확정 후 ‘17년 예산에 반영함 □ 처리결과(계획) ○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결산추경에 정리하도록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산림녹지과
제 목	6-2.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 방안 강구
지적내용	☐ 세출예산 불용률 100% 현황 ○ 1건 : 예산액 4,000천원, 불용액 4,000천원(100%) - 산불방지(자체) :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백만원 불용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산불방지(자체) : 본 예산은 야간대형산불 발생시 인근 시·군 진화대출동비로 2016년에는 야간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인근 시·군 진화대 출동비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 처리결과(계획) ○ 면밀한 사업계획과 소요재원 판단으로 결산추경 정리 등 불용방지노력 및 사업계획 변경이나 불요불급한 사유 등 발생시 재정의 효율성 제고 노력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의회사무처
제 목	6-3.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지적내용	세출예산(기타보상금) 전액 미집행하여 100% 불용처리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환경·과학기술·의료분야 등 특수분야의 안전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위촉·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편성 ※ 근거 :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0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 활용 보상금(10,000천원)을 연초에 배분 - 행자·환복·농산경·문화건설안전·교육 등 5개 상임위 : 각 2,000천원 ○ 예산집행은 주로 행정사무감사(조사), 예산심사 등에 활용되나, 16년에는 5개 상임위 전체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결산추경에 시기적으로 삭감 반영하지 못함 (결산추경 자료제출 기한 : 9.30 / 행감 및 예산심사 : 11월 하순) □ 처리결과(계획) ○ 금년부터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또한, 사전에 각 상임위 전문가 활용 계획을 파악하여 전문가 활용 계획이 없을 경우, 결산추경에 삭감 반영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제 목	6-4.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지적내용	☐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아 불용액 100% 발생 ○ 세출예산 불용액 100% 현황 - 1건 : 예산액 1백만원 / 불용액 1백만원 - 종자생산 기반조성 및 환경개선(보조) : 시설부대비 1백만원 불용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고품위 종자생산 및 기반조성 시설공사 부대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장 위치가 사무실과 인접한 거리에 있어 여비 미집행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 처리결과(계획) ○ 불용예산 1백만원을 ' 17.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 계획 ○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결산추경시 조치 등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농식품인력개발원																													
제 목	6-5.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지적내용	○ 당해연도에 편성된 각종 예산은 면밀한 세부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불용처리하였음. (단위 : 백만원) <table><tr><td>부 서</td><td>세부사업</td><td>통계목</td><td>예산현액</td><td>지출액</td><td>이월액</td><td>집행잔액</td><td>비율</td></tr><tr><td rowspan="2">농식품인력개발원</td><td>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운영</td><td>자산 및 물품취득비</td><td>2</td><td>0</td><td>0</td><td>2</td><td>100%</td></tr><tr><td>전북농업마이 스터대학과정</td><td>재료비</td><td>43</td><td>11</td><td>0</td><td>31</td><td>73.51%</td></tr></table>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농식품인력개발원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2	0	0	2	100%	전북농업마이 스터대학과정	재료비	43	11	0	31	73.51%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농식품인력개발원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2	0	0	2	100%																						
		전북농업마이 스터대학과정	재료비	43	11	0	31	73.51%																						
< 개선방안 > ○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결산추경에 정리하고 ○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불용예정 통지를 받거나 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처리결과 또는 계획	□ ‘16년도 예산집행 잔액 발생사유 1. 농업인력양성교육과정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1,6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당초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 을 추진하고자 1회 추경에 편성된 항목임. (기 교육예산에 추가편성 18,500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1회 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6,344	65,444	10,900	기체임대비, 보험료, 교재비, 인증점사료 등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12,960	406,960	6,000	강사료 등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10,800	10,800	-																								
		재료비	재료비	120,060	120,060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	-	1,600	시물레이터(교습용) 구입																							
합계			621,764	603,264	18,500																									

- 농업용 드론 자격증 :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자격증(12kg이상 드론)
- 당초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 은 11~12월 중 3주간 추진될 예정.
- 그러나 면밀한 검토 결과 아래 3가지 사유로 미추진되었음.
- ① 실기시험을 위한 비행경력승인은 전문교육기관, 한국모형항공협회만 가능
 - * 실기시험 응시조건(이론 20H, 모의비행 20H, 실기비행 20H, 필기시험 합격)
- ② 교육기관(한국모형항공협회) 교육(강사료) 비용 선납 요청
 - ☞ 사업 추진 후 예산 집행은 가능하나 교육비용 선납 불가
 - * 예산항목 : 사무관리비(임대비용), 행사실비보상금(강사료)
- ③ 교육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나 교육 성과 창출 불확실
 - ☞ 교육비용이 민간수준으로 비용 과다 소요 ⇒ 1인 3,250천원
 - ☞ 필기시험 미합격자는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평균 자격증 취득률은 60~70% 수준(전문교육기관은 80%)으로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관리가 불가함.
- 따라서, 당초 농업용 드론 교육 추진의 일환으로 구입예정이었던 시뮬레이터(교습용)의 미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천원 불용

2.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재료비 집행 잔액: 31,464천원

- 시설원에 관련전공(고추, 토마토, 딸기 등)의 경우 농식품인력개발원 실용농업교육센터를 이용한 실습교육 진행으로 인하여,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예산 절감.
- ‘16년 구제역·AI 발생으로 축산관련 전공 교육 지연 및 실습교육 축소에 따라 실습재료비 불용.

□ 처리결과(계획)

- 교육과정 예산 수립 전에 추진 시기, 방법, 최근 집행실적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또한, 기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정보화총괄과																																														
제 목	6-6.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지적내용	○ 지방재정법 또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각종 예산은 면밀한 세부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현액의 50% 이상 불용처리 하였음. ○ 세출예산 불용률 50%이상 현황 (단위: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부 서 명</th><th>세부사업</th><th>통계목</th><th>예산현액</th><th>지출액</th><th>이월액</th><th>집행잔액</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정보화총괄과</td><td>정보화위원회 운영</td><td>사무관리비</td><td>3</td><td>1</td><td>0</td><td>2</td><td>77.78%</td></tr> <tr> <td>〃</td><td>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td><td>행사실비보상금</td><td>2</td><td>1</td><td>0</td><td>1</td><td>69.09%</td></tr> <tr> <td>〃</td><td>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td><td>사무관리비</td><td>2</td><td>1</td><td>0</td><td>1</td><td>51.17%</td></tr> <tr> <td>〃</td><td>중고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td><td>기타보상금</td><td>3</td><td>1</td><td>0</td><td>1</td><td>52.04%</td></tr> </tbody> </table>							부 서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정보화총괄과	정보화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	1	0	2	77.78%	〃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	행사실비보상금	2	1	0	1	69.09%	〃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사무관리비	2	1	0	1	51.17%	〃	중고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기타보상금	3	1	0	1	52.04%
부 서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정보화총괄과	정보화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	1	0	2	77.78%																																								
〃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	행사실비보상금	2	1	0	1	69.09%																																								
〃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사무관리비	2	1	0	1	51.17%																																								
〃	중고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기타보상금	3	1	0	1	52.04%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정보화위원회 운영 - 정보화위원회 위원 참석률 저조 ○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 -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 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문화의 달 행사 다과비로 당초계획 보다 축소하여 운영하였음. ※ 대상/인원 : 한국게임과학고, 전주대·전북대 콘텐츠관련 창작자 / 200여명(618천원) ○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 평가위원회 책자제작 집행잔액 ○ 중고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심층상담 면담건수 감소(95명→51명)에 따른 잔액 □ 처리결과(계획) ○ 정보화위원회 운영 - 정보화위원회 위원 임기만료로 2017. 2월 위원을 재위촉하여 참석률 제고 ○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 - 정보문화의 달 행사 규모를 확대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 국비 반납 및 2017년 감액 편성 ○ 중고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국비 반납 및 2017년 감액 편성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총무과
제 목	6-7.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세출예산 불용률 50%이상 현황)
지적내용	지방재정법 또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각종 예산은 면밀한 세부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6 년도에 편성된 예산현액의 50%이상 불용처리 하였음.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2016년 총무과 공무원소통 운영 행사운영비 10백만원중 집행잔액 6백만원 미집행 사유는 “2016년 공무원노사 어려운 청원돕기 사랑의 일일찾집 행사” 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노조 자체 의견수렴 결과 티켓구매, 성금모금 등으로 청원들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일일찾집행사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임. ※ 2016년 어려운 청원돕기 사랑의 일일찾집 행사 - 일 시 : 2015. 6. 26(금) 08:00 ~ 20:00 - 장 소 : 도청사 지하1층 후생관 - 내 용 : 일일찾집 수입금 14,755천원, 어려운 청원 7명에게 전액 지원 □ 처리결과(계획) ○ 금후 면밀한 세부집행계획등을 통해 편성된 사업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음. ※ 2017년 6월 중순에 제2회 공무원노사 어려운 청원돕기 사랑의 일일찾집 행사 개최 예정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농축수산물식품국 축산과
제 목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지적내용	지방재정법 또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각종 예산은 면밀한 세부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세출예산 불용률 50% 이상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해당사업 : 구제역 방역대책(예비비/공공운영비) - 예산액(3,600천원), 집행액(1,291천원), 집행잔액(2,309) / 64%불용 ○ 동 사업은 ‘16. 1월 도내(김제 1, 고창 1)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예산으로 현장 방역지도 및 축산사업장 소독점검 등을 위해 방역지도차량 유류비를 공공운영비를 예비비로 요구하여 편성하였으나, 신속한 차단방역 실시로 최초발생 2건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 16. 2월중순경 방역대가 해제 되어 조기 종식 됨에 따라 차량운행 사유 감소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 처리결과(계획) ○ 향후 (긴급)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예비비 요구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요구하여 불용예산 최소화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문화유산과
제 목	6-8.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현지조사 자문보상,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
지적내용	○ 지방재정법 또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각종 예산은 면밀한 세부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나, 2016년도 편성된 예산현액의 50%이상 불용처리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현지조사 자문보상 - 전라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6조에 의거 세계유산 등재·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 조정을 위한 위원회 수당과 여비 편성 - 예산편성 시, 4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1회 개최로 예산 불용 발생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개최 - 2016년에는 해당 안건 미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불용 발생 □ 처리결과(계획) ○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투자유치과									
제 목	6-9. 투자유치 보조금 심사 자문수당									
지적내용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투자유치 보조금 심사 자문수당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table><tr><td rowspan="2">예산집행</td><td>통 계 목</td><td>예 산 액</td><td>집행액(집행률)</td><td>잔 액</td></tr><tr><td>사무관리비</td><td>3,000</td><td>550(18%)</td><td>2,450</td></tr></table> ○ 사업 개요 - 목 적 : 도내이전 및 투자기업에게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공인회계사 등)의 사전 검토 필요 - 기 간 : 2016. 1월~12월 - 시행주체 : 전라북도 - 주요내용 : 투자보조금 신청에 따른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산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등)에게 지급하는 심사 자문수당 지급 ○ 예산 불용액 발생 사유 - 투자보조금 사전심사는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일 경우에만 회계전문가에게 심사의뢰를 하고 있는데, 2016년 투자보조금 신청 기업은 1건으로, 해당 건 사전심사 의뢰에 따라 잔액 발생 □ 처리결과(계획) - 투자 완료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기 예측 등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예상을 보다 면밀히 하여 불용액 발생최소화	예산집행	통 계 목	예 산 액	집행액(집행률)	잔 액	사무관리비	3,000	550(18%)	2,450
예산집행	통 계 목		예 산 액	집행액(집행률)	잔 액					
	사무관리비	3,000	550(18%)	2,450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투자유치과													
제 목	6-9. 투자유치 심의.자문위원회 운영													
지적내용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투자유치 심의.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예산집행</td><td style="width: 20%;">통 계 목</td><td style="width: 20%;">예 산 액</td><td style="width: 20%;">집행액(집행률)</td><td style="width: 25%;">잔 액</td></tr> <tr> <td></td><td>사무관리비</td><td>5,000</td><td>1,497(30%)</td><td>3,503</td></tr> </table> ○ 사업 개요 - 목 적 :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도내 투자유치의 활성화 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 및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등 구성·운영 - 기 간 : 2016. 1월~12월 - 시행주체 : 전라북도 - 주요내용 : 투자유치 심의.자문활동에 대한 참석수당 등 지급 ○ ' 16년 주요 성과 - 투자심의위원회 개최(2회) : 보조금 신청기한 연장 신청 기업에 대 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제2차 투자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함에 따 라 참석수당 미지급(1차 : '16. 8. 12 / 2차(서면) : '16. 12. 28. ~ 12. 31.) -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회 개최(2회) : 1차 '16. 11. 14 / 2차 ' 16. 12. 9. □ 처리결과(계획) - 보조금 신청예상 기업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의 참석률 저조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추 후 자문위원회 개최 시 일정 사전조율 및 충분한 참석협의 추진하 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				예산집행	통 계 목	예 산 액	집행액(집행률)	잔 액		사무관리비	5,000	1,497(30%)	3,503
예산집행	통 계 목	예 산 액	집행액(집행률)	잔 액										
	사무관리비	5,000	1,497(30%)	3,503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기업지원과
제 목	6-10.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지적내용	☐ 사무관리비(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 임차)세출 예산 불용률 75.94% ○ 예산현액 : 25,000천원 ○ 지 출 액 : 6,016천원 ○ 집행잔액 : 18,984천원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전세금 회수를 위한 법원 임의 경매를 추진하여 경매 예납금 등 관련 비용(법무사 경매대행수수료, 추가예납금 등)을 지출하려고 하였으나 전주법원 임의경매 추진 일정불확실로 집행잔액 18,984천원이 발생함 - 법원 경매 신청 : '16. 9. 28 - 법원 경매 개시 : '17. 4. 3 ☐ 처리결과(계획) ○ 추후 예산 집행시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산업진흥과
제 목	6-11.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지적내용	○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현액의 50%이상 불용처리 하였음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산업진흥과 관용차량인 전기자동차(1대)의 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전기차 특성상 고장이 없을시 보험료, 세금 이외 특별한 유지관리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함 * '16년 집행(595,590원) : 보험료 및 세금 554,810원, 기타 유지관리 40,780원 - 전기차는 업무를 위해 상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수리 등을 위해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못함 ☐ 처리결과(계획) - '16년에는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기차 부품 고장발생시 수리에 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 17년에도 1,500천원 예산을 계상하여 운영 중에 있음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국제협력과
제 목	6-12.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지적내용	지방재정법 또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각종 예산은 면밀한 세부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현액의 50%이상 불용처리 하였음 - 세계지방정부연합 참가 운영(외빈초청여비) · 예산현액 : 279백만원 · 지 출 액 : 119백만원 · 집행잔액 : 160백만원(57.17%)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초청 예산지원 인원 감소(43명→16명*)에 따른 항공비 및 숙식비 집행잔액 발생 * 16명 (패널 및 발표자, UCLG ASPAC 사무국 관계자 등) ※ 제6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 총회 - 2016. 9. 5~9. 8 / 32개국, 683명 참석 (역대 최대규모) - 아·태 지방정부간 우수 정책 및 정보교류, 전라북도 이미지 제고 □ 처리결과(계획) - 집행잔액 반납 처리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새만금개발과
제 목	6-13. 새만금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외빈초청여비)
지적내용	새만금 투자유치활성화 외빈초청여비 불용액 과다(52.69%) 발생 * 예산액 : 10,000천원 / 집행액 : 4,731천원 / 집행잔액 : 5,269천원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 16년 12월 중에 새만금 관심기업 대만 O사 임원진 대상으로 새만금 산업 기반시설 및 투자안내 등 투자환경 점검을 위한 새만금 현장방문 초청(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런 기업측 사정으로 인해 국내 방문 일정이 '17년 상반기*로 연기되어 결산추경에 삭감반영하지 못하였음 * 대만 O사 방문 : '17. 3. 21 ~ 3. 22(2일간) ☐ 향후계획 ○ 향후 사업추진 계획(상 2회, 하 2회)에 맞는 효율적 예산집행관리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제 목	6-14. 연구교습어장(고군산군도 명계양식 시범사업)사업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지적내용	세출예산 불용률 50%이상 사업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백만원 중 4백만원 불용처리(51.07%)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2016년 연구교습어장사업(과제명 : 고군산군도 명계 양식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고군산지역에 새로운 양식품종을 개발을 목표로 신품종을 이식하고 월별조사(어장기초환경조사, 성장도 등)등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2016년 하반기에 해양환경(고수온)과 질병발생(물렁증)등의 예측 불가한 문제 발생으로, 2016년 11월 사업이 조기종료 되어 세출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연구교습어장 사업종료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시설물 철거 및 세입처리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연구교습어장 사업 추진 시 당해연도에 편성될 예산에 대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처리가 예산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여성청소년과																
제 목	6-15.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지적내용	○ 지방재정법 또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각종 예산은 면밀한 세부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현액의 50%이상 불용처리 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어린이회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 및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보수 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1993년 개관한 어린이회관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어린이회관 폐관(철거)으로 사업 미집행하여 불용액 발생 <table border="1"> <tr> <th>부 서</th> <th>세부사업</th> <th>통계목</th> <th>예산현액</th> <th>지출액</th> <th>이월액</th> <th>집행잔액</th> <th>비율</th> </tr> <tr> <td>어린이회관</td> <td>청사 환경개선</td> <td>시설비</td> <td>50</td> <td>4</td> <td>0</td> <td>46</td> <td>92.12%</td> </tr> </table> □ 처리결과(계획) ○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결산추경에 정리하도록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어린이회관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50	4	0	46	92.12%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어린이회관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50	4	0	46	92.12%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예산과
제 목	예산의 성과보고서 실적검증 방법 보완 필요
지적내용	○ 예산의 성과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무관한 지표를 사용하거나, 투입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 지적 ○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실적에 대해 좀 더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는 검증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처리계획	○ 예산과 무관한 지표사용 사례 개선 제안 -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첫 시행으로 성과지표 작성시 시행중인 BSC 성과지표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지표관리는 되었지만 일부 예산과 무관한 지표설정 설정 사례가 발생 - 앞으로는 성과지표 작성시 비 예산 지표를 배제하고,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결과 중심적 지표 설정 ○ 실적의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는 검증 방법 개선 검토 - 성과보고서의 객관적인 실적 검증을 위하여 현재 실국별로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는 성과평가위원회” 등을 활용한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성 및 책임성 강화

결산검사 개선 ·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성과관리과
제 목	예산의 성과보고서 실적검증 방법 보완 필요
지적내용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시 BSC성과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문제점 발생 - 예산과 무관한 지표 설정, 성과지표 유형(투입,과정,산출,결과) 상이, 투입예산과 관련된 지표 미설정 -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최초 지표개발 시 전문가의 컨설팅 및 성과관리과 코칭 부족)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BSC직무성과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성적(실적)을 평가하고, 근무과 성과급 등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 우리도 자체적으로 도입, 예산 및 비예산 모든 업무 중에서 업무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나 ○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 행정자치부에서 설정한 동일한 지침에 의거 전국 17개 시도가 추진하는 제도임 ○ 위 두 가지 제도는 근거규정, 실시방법, 활용목적 등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 BSC 직무성과평가 지표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예산과 무관한 지표설정, 투입예산과 관련된 지표 미 설정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BSC직무성과평가 지표 설정 절차는 - 먼저 각 부서에서 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업무를 지표로 설정하고 - 부서별 지표설정 과정에서 전문가 코칭을 통해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지표 등 소극적인 성과지표가 합리적 도전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권고를 따르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지표성격평가*시 불리하게 함으로써 부서에서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전문가 지표성격평가) 지표의 수준, 지표의 도전성·난이도 및 도전 기여도, 실행과제의 적절성 등 평가 □ 처리결과(계획) ○ 따라서 정확한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예산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며 - 다만 BSC 성과지표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지표의 경우에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참고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